|  |  |  |
| --- | --- | --- |
| **계약 위법행위 감독 처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1호  《계약 위법행위 감독 처리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10년 10월 13일  **제1조**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이익과 사회공중이익,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계약 위법행위라 함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법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을 이용하여 법률, 법규 또는 이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 시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시해야 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거나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 직권의 범위 안에서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리한다.  **제5조**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계약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리할 때 조사와 유도, 처벌과 교육을 결부하고 행정적 지도를 실시하여 당사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 이행하도록 독촉,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이익, 사회공중이익을 수호한다.  **제6조** 당사자는 계약을 이용하여 아래의 사기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계약 위조 행위  (2) 계약 주체자격을 허위 날조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  (3) 계약 목적물을 위조하거나 또는 화물의 공급원, 판매루트를 조작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게 한 행위  (4) 허위정보를 발표하거나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5)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 당사자를 유혹하여 착오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성취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를 유혹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6) 실제 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유혹하여 계약을 체결, 이행하게 한 행위  (7) 악의적으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조항을 설정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8) 허위이유를 조작하여 계약을 중지(종료)하고 재물을 사취한 행위  (9) 허위담보를 제공한 행위  (10) 기타 사기수단을 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행위.  **제7조** 당사자는 계약을 이용하여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히는 아래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회뢰, 협박 등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힌 행위  (2) 악의적 결탁수단으로 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힌 행위  (3) 국가가 금지하거나 매매를 제한하는 재물을 불법 매매한 행위  (4)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국가의 지령성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5) 기타의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히는 계약 위법행위.  **제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알 수 있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방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증명, 라이선스, 인감, 계좌를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서식조항을 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자는 서식조항 중 아래의 자기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소비자의 건강피해를 초래한 책임  (2) 고의로나 중대 과실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책임  (3)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담보책임  (4) 위약으로 인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위약책임  (5)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기타 책임.  **제10조**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서식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자는 서식조항에 소비자의 아래의 책임을 증가하지 못한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법정 금액이나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서식조항 제공측이 부담해야 할 경영리스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3) 기타의 법률, 법규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 책임.  **제11조**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서식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자는 서식조항에 소비자의 아래의 권리를 배제하지 못한다.  (1)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권리  (2) 위약금 지불을 청구하는 권리  (3)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4) 서식조항을 해석하는 권리  (5) 서식조항 분쟁으로 인한 소 제기 권리  (6) 소비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  **제12조** 당사자가 이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법규가 이미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법률, 법규가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 사안을 감안하여 각각 경고를 주거나 위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조** 당사자의 위약행위가 경미하고 또한 지체 없이 시정하여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위해결과를 제거하거나 경감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경감하며, 독촉, 유도를 거쳐 스스로 시정하거나 지체 없이 위약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경하게 처한다.  **제14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게 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201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合同违法行为监督处理办法**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51号  　　《合同违法行为监督处理办法》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0年11月13日起施行。  　　　　　　　　　　　　　　　　　　　　　 局长 周伯华　　　　　　　　　　　　　　　　　　　 二○一○年十月十三日  **第一条**　为了维护市场经济秩序，保护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当事人合法权益，依据《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和有关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合同违法行为，是指自然人、法人、其他组织利用合同，以牟取非法利益为目的，违反法律法规及本办法的行为。  **第三条**　当事人订立、履行合同，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尊重社会公德，不得扰乱社会经济秩序，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  **第四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在职权范围内，依照有关法律法规及本办法的规定，负责监督处理合同违法行为。  **第五条**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依法监督处理合同违法行为，实行查处与引导相结合，处罚与教育相结合，推行行政指导，督促、引导当事人依法订立、履行合同，维护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  **第六条**　当事人不得利用合同实施下列欺诈行为：  　　（一）伪造合同；  　　（二）虚构合同主体资格或者盗用、冒用他人名义订立合同；  　　（三）虚构合同标的或者虚构货源、销售渠道诱人订立、履行合同；  　　（四）发布或者利用虚假信息，诱人订立合同；  　　（五）隐瞒重要事实，诱骗对方当事人做出错误的意思表示订立合同，或者诱骗对方当事人履行合同；  　　（六）没有实际履行能力，以先履行小额合同或者部分履行合同的方法，诱骗对方当事人订立、履行合同；  　　（七）恶意设置事实上不能履行的条款，造成对方当事人无法履行合同；  　　（八）编造虚假理由中止（终止）合同，骗取财物；  　　（九）提供虚假担保；  　　（十）采用其他欺诈手段订立、履行合同。  **第七条**　当事人不得利用合同实施下列危害国家利益、 社会公共利益的行为：  　　（一）以贿赂、胁迫等手段订立、履行合同，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  　　（二）以恶意串通手段订立、履行合同，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  　　（三）非法买卖国家禁止或者限制买卖的财物；  　　（四）没有正当理由，不履行国家指令性合同义务；  　　（五）其他危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合同违法行为。  **第八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知道或者应当知道的情况下，为他人实施本办法第六条、第七条规定的违法行为，提供证明、执照、印章、账户及其他便利条件。  **第九条**　经营者与消费者采用格式条款订立合同的，经营者不得在格式条款中免除自己的下列责任：  　　（一）造成消费者人身伤害的责任；  　　（二）因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消费者财产损失的责任；  　　（三）对提供的商品或者服务依法应当承担的保证责任；  　　（四）因违约依法应当承担的违约责任；  　　（五）依法应当承担的其他责任。  **第十条**　经营者与消费者采用格式条款订立合同的，经营者不得在格式条款中加重消费者下列责任：  　　（一）违约金或者损害赔偿金超过法定数额或者合理数额；  　　（二）承担应当由格式条款提供方承担的经营风险责任；  　　（三）其他依照法律法规不应由消费者承担的责任。  **第十一条**　经营者与消费者采用格式条款订立合同的，经营者不得在格式条款中排除消费者下列权利：  　　（一）依法变更或者解除合同的权利；  　　（二）请求支付违约金的权利；  　　（三）请求损害赔偿的权利；  　　（四）解释格式条款的权利；  　　（五）就格式条款争议提起诉讼的权利；  　　（六）消费者依法应当享有的其他权利。  **第十二条**　当事人违反本办法第六条、第七条、第八条、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规定，法律法规已有规定的，从其规定；法律法规没有规定的，工商行政管理机关视其情节轻重，分别给予警告，处以违法所得额三倍以下，但最高不超过三万元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以一万元以下的罚款。  **第十三条**　当事人合同违法行为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危害后果的，应当依法不予行政处罚；主动消除或者减轻危害后果的，应当依法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经督促、引导，能够主动改正或者及时中止合同违法行为的，可以依法从轻行政处罚。  **第十四条**　违反本办法规定涉嫌犯罪的，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按照有关规定，移交司法机关追究其刑事责任。  **第十五条**　本办法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十六条**　本办法自2010年11月13日起施行。 |